|  |  |  |
| --- | --- | --- |
|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공고2017년제14호  금융계좌 세무관련 정보자동교환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금융기구가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에 대한 실사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및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이에 발표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개인세수 거주자 신분 성명문서 (샘플)  2. 기구세수 거주자 신분 성명문서 (샘플)  3. 통제인세수 거주자 신분 성명문서 (샘플)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인민은행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  2017년 5월 9일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 실사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과<다자간 주무관청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금융기구가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에 대한 실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금융기구가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구는 성실 신용 및 신중근면의 원칙을 따르며 다른 유형의 계좌에 대해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좌소지인 또는 관련 통제인의 세수거주자 신분을 조사하고 비거주자의 금융계좌를 식별하여, 계좌 관련정보를 수집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구는 완전한 비거주자 금융계좌 실사관리제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업무과정과 조작규범을 설계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본 방법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실사과정 중에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엄격하게 기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그 분지기구(지점)가(이)본 방법에서 규정한 실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통일화 시키고, 관리감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계좌 소지인에게 본 기구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과 제출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계좌 소지인이 신분정보를 은폐하는 것을 명시 및 암시 또는 방조할 수 없으며, 계좌 소지인이 자산을 은닉하는데 협조할 수 없다.  제5조 계좌 소지인은 금융기구의 실사업무에 협조하고, 진실, 적시, 정확 및 완전하게 금융기구에 본 방법에서 규정한 관련 정보를 제출하며, 또한 본 방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준수하지 않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의  제6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금융기구는 예금취급금융기구, 위탁관리기구, 투자기구, 특정한 보험기구 및 그 분지기구(지점)를(을)포함한다.  6.1 예금취급금융기구는 일상적인 경영활동 중 예금을 흡수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6.2 위탁관리기구는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총수입의 20%이상이 고객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기구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며, 기구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기구 존속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6.3 투자기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6.3.1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총수입의 50%이상이 고객을 위해 금융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는 기구에서 나오며, 기구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기구 존속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6.3.2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총수입의 50%이상이 투자 및 재투자 또는 금융자산거래에서 나왔으며 또한 예금취급 금융기구, 위탁관리기구 및 특정한 보험기구 또는 본 항 제1목에 서술한 투자기구가 관리를 진행하고 투자결정을 내리는 기구이며, 기구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기구 존속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6.3.3 증권투자기금 및 사모투자기금 등은 투자 및 재투자 또는 금융자산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 실체이다.  6.4 특정한 보험기구는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 또는 연금업무를 전개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보험기구는 전 연도(양력)내, 보험 및 재보험과 연금계약의 수입이 총수입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구 또는 전 연도(양력)말소지한 보험 및 재보험과 연금계약의 자산이 총자산 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금융자산은 증권, 동업인권익(권리와 이익), 대종상품(벌크화물), 스와프(Swap), 보험계약, 연금계약 또는 상술한 자산의 권익(권리와 이익)을 포함하며, 앞서 말한 권익(권리와 이익)은선물 및 선도거래 또는 선물옵션 을 포함한다. 금융자산은 실물상품 또는 부동산 비(非)채무의 직접적인 권익(권리와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아래에 열거한 기구는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구에 속한다.  7.1 상업은행, 농촌신용합작사 등 공공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구 및 정책성 은행  7.2 증권회사  7.3 선물회사  7.4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사모기금관리회사, 사모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동업기업  7.5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 또는 연금업무를 전개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자산관리회사  7.6 신탁회사  7.7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기구  제8조 아래에 열거한 기구는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구에 속하지 않는다.  8.1 금융자산관리회사  8.2 재무회사  8.3 금융리스회사  8.4 자동차금융회사  8.5 소비금융회사  8.6 화폐중개회사  8.7 증권등기결산기구  8.8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  제9조 본 방법에 일컫는 금융계좌는 다음을 포함한다.  9.1 예금계좌는 예금성격의 업무를 갖춰 형성된 계좌를 전개하는 것을 가리키며, 당좌예금, 정기예금, 여행자 수표, 예치기능을 갖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다.  9.2 위탁관리계좌는 타인을 위해 금융자산 업무를 갖춰 형성된 계좌를 전개하는 것을 가리키며,고 객을 대신하여 금융자산거래의 업무, 고객위탁접수 및 고객을 위해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9.2.1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업무는 증권중개업무, 선물중개업무, 고객을 대신하여 귀금속 및 국채업무를 전개하거나 기타 유사한 업무를 포함한다.  9.2.2 고객의 위탁을 접수하거나 고객을 위해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는 금융기구 발기 및 설립 또는 독립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재테크 상품, 기금, 신탁계획, 전문/단체 유형의 자산관리계획 또는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다.  9.3 기타 계좌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계좌를 가리킨다.  9.3.1 투자기구의 주주권 또는 채권권익(권리와 이익), 사모투자기금의 동업인권익(권리와 이익)과 신탁의 수익권포함  9.3.2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제10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는 중국 세수거주자 이외의 개인과 기업(기타조직 포함)을 가리키지만 정부기구, 국제조직, 중앙은행, 금융기구 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회사 및 그 관련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증권시장은 소재지 정부의 인가와 관리감독을 받는 증권시장을 가리킨다. 중국 세수거주자는 중국 세수에서 규정한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개인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금융계좌는 중국 경내의 금융기구에서 개설 또는 보유하고,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통제인이 있는 소극적 비금융기구가 소지하는 금융계좌를 가리킨다. 금융기구는 비거주자 금융계좌를 식별하는 날로부터 이를 비거주자 금융계좌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계좌 소지인이 중국 세수거주자와 기타국가(지역)의 세수거주자로 동시에 구성되는 경우, 금융기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그 계좌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계좌 소지인은 금융기구가계좌 소유자로 등기하거나 확인한 개인 또는 기구를 가리키며 단, 대리인, 명의소지인, 수권 서명인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계좌 소지인은 현금가치를 획득하거나 계약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기구를 가리키며, 앞서 말한 개인 또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 소유자 및 계약 조항에 근거 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구이다.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좌 소지인은 계약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  제1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소극적 비금융기구는 다음 조건 중하나에 부합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12.1전 연도(양력)내, 주식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수입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속하지 않는 수입 및 앞서 말한 수입을 발생시킨 것을 근거로 금융자산의 양도수입이총수입 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비금융기구  12.2 전 연도(양력) 말, 본관 제1항에서 서술한 수입의 금융자산이 총자산 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비금융기구  12.3 세수거주자 국가(지역)에서 금융계좌 세수관련정보 자동교환 기준을 실시하지 않는 투자기구  다음과 같은 비금융기구는 소극적 비금융기구에 속하지 않는다.  12.3.1 상장회사 및 그 관련기구  12.3.2 정부기구 또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이행하는 기구  12.3.3 비금융기구 주주권을 소지하거나 또는 그 융자와 서비스만을 제출하기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  12.3.4 설립기간이 24개월 미만이고, 아직 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기업  12.3.5 자산철수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 처해있는 기업  12.3.6 오로지 본 그룹(해당그룹 내 기구는 모두 비금융기구)내 관련기구와 융자 또는 헤징 거래를 전개하는 기업  12.3.7 비영리 조직  제1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통제인은 어느 한기구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회사의 통제인은 아래 규칙의 따라 차례대로 판정한다.  13.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를 초과하는 회사 주주권 또는 표결권을 보유하는 개인  13.2 인사 및 재무 등 기타방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개인  13.3 회사의 고급관리인원  동업기업의 통제인은 25%를 초과하는 동업권익(권리와 이익)을 보유하는 개인이다.  신탁의 통제인은 신탁의 위탁인, 수탁인, 수익인 및 기타 신탁에 대한 최종적으로 유효한 통제를 실시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기금의 통제인은 25%를 초과하는 권익(권리와 이익)부분을 보유하거나 기타기금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14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관련기구는 하나의 기구가 다른 하나의 기구를 통제하거나 또는 두개의 기구 공동 통제를 받는 것을 가리키며, 해당 두개의 기구는 서로 관련기구가 된다.  앞서 말한 통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구의 50% 이상의 주주권과 표결권을 보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15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금융계좌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포함한다.  기존계좌는 아래조건 중하나에 부합하는 계좌이며, 기존개인계좌와 기존기구계좌를 포함한다.  15.1 2017년 6월 30일까지 금융기구에서 보유하고, 개인 또는 기구가소지하는 금융계좌  15.2 2017년 7월 1일(당일 포함, 하동)이후 개설하고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계좌  15.2.1 계좌 소지인이 이미 동일한 금융기구에서 본관 제1항에 서술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15.2.2 상술한 금융기구가 계좌의 총잔액 합산을 확정할 때, 본관 제2항에서 서술한 계좌와 본관 제1항에서 서술한 계좌를 동일 계좌로 간주하는 경우  15.2.3 금융기구가 이미 본관 제 1항에 서술한 계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고객 신분식별을 진행한 경우  15.2.4 계좌 개설 시, 계좌 소지인이 본 방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의 기타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존개인계좌는 저(低) 순자산가치계좌와 고(高)순자산가치계좌를 포함하며 저(低) 순자산가치계좌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좌의 총잔액 합산이100만 달러(이하 “백만 달러”, 하동)에 상응하나 이를 초과하지 않는 계좌이고, 고(高)순자산가치계좌는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계좌와 총잔액의 합산이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가리킨다.  신규계좌는 2017년 7월 1일 이후 금융기구에서 개설하는 경우, 제2관 제2항 규정된 계좌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기구가 소지하는 금융계좌를 가리키며, 신규개인계좌와 신규기구계좌를 포함한다.  제16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계좌의총잔액합산은 계좌 소지인이 동일한 금융기구 및 그 관련기구에서 소지하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자산의 가치를 더한 합을 가리킨다.  금융기구의 합산이 필요한 계좌는 컴퓨터 시스템 중 고객번호, 납세자식별번호 등 관건적 데이터 항목을 통해 식별 가능한 모든 금융계좌로 한정한다.  공동명의계좌의 각 1인 계좌 소지인이 총잔액을 합산할 시, 해당 공동명의계좌의 모든 잔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高)순자산가치계좌여부를 확정할 시, 고객 매니저는 그 직무를 맡은 금융기구 내 여러 계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지를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좌에 대한합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고객 매니저는 금융기구가 지정하고, 특정한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며, 고객수요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관련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 및 추천 또는 제출하거나 기타협조를 제출하는 인원이지만, 앞서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우연한 원인으로 인해 고객에게 상술한 서비스를 제출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금융기구에서 계좌의 총잔액을 합산할 시, 계좌통화가 달러 이외인 경우, 계산 당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고시한외환 중간 값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여야 한다. 달러로 환산할 시, 기존 통화금액에 근거하여 금액을 환산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금융기구의 기능통화로 기록된 금액에 근거하여 환산을 할 수 있다.  제17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표식은 금융기구가 기존개인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개인여부를 검색 및 판단하는 용도의 관련요소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7.1 계좌 소지인의 경외 신분증명  17.2 계좌 소지인의 경외 현거주 주소 또는 우편주소, 우편사서함 포함  17.3 계좌 소지인의 경외 전화번호, 또한 중국 경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17.4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경외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체하라는 지시  17.5 계좌 대리인 또는 수권서명인의 경외주소  17.6 경외의 전달주소 또는 보관주소이며, 또한 유일한 주소지이다. 전달주소는 계좌 소지인이 관련 서한을 전달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하는 주소이며, 전달인이 서한을 수취한 후 다시 계좌 소지인에게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보관주소는 계좌 소지인이 그 관련 서한을 잠시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주소를 가리킨다.  제18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증명자료는 이하를 가리킨다.  18.1 정부가 발급한 세수거주자 신분증명  18.2 정부가 발급한 개인성명을 포함하며 통상적인 용도의 신분식별의 유효한 신분증명 또는 정부가 발급한 기구명칭 및 주요 사무실주소 또는 등록설립주소 등 정보를 포함한 정부문서  제3장 개인계좌 실사  제19조 금융기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신규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전개한다.  19.1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기구는 계좌 소지인이 서명한 세수 거주자 신분성명문서 (이하 “성명문서”)를 획득하여, 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 개인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본 기구의 전자채널을 통해 개인계좌 개설신청을 접수할 시, 계좌 소지인에게 전자 성명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성명문서는 계좌개설자료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성명문서 관련정보는 개설 신청서에 통합할 수 있다. 개인이 타인을 대신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또한 단위가 개인을 대신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할 시, 계좌 소지인의 서면 수권을 받은 후대리인이 성명문서에 서명 할수 있다.  19.2 금융기구는 계좌개설자료(자금세탁방지고객 신분식별절차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포함)에 근거하여, 성명문서의 합리성에 대한심사를 진행하고, 작성정보가 기타정보와 확연한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성명문서에 불합리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여길 경우, 계좌 소지인에게 유효한 성명문서를 제출하거나 해석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유효한 성명문서 또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19.3식별이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금융기구는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19.4 금융기구가 신규개인계좌 상황에 변화가 생겨기존에 있던 성명문서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할 경우, 계좌 소지인에게 유효한 성명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계좌 소지인은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성명문건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그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융기구는 2018년 12월 31일전까지 다음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기존 개인 저(低) 순자산가치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0.1 현재 고객자료(자금세탁방지 고객 신분식별 절차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포함, 하동)중에 남아있는 주소, 또한 현 거주지 또는 주소에 위치한 현 거주 국가(지역)의 계좌 소지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좌 소지인의 주소에 근거하여 비거주자 개인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경우, 고객자료에 남아 있는 주소를 현 거주지로 간주할 수 없다.  20.2 현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검색을 전개하고, 계좌에 임의의 비거주자 표식존재여부를 식별한다.  현재 고객자료중 현 거주지 정보가 없을 경우, 또는 계좌상황에 변화가 생겨 현거주지 증명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구는 전관 제2항의 방식을 채택하여 실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융기구는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기존 개인 고(高) 순자산가치계좌에 대해 차례대로 다음의 실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1.1 전자기록검색과 종이기록검색을 전개하고, 계좌에 임의의 비거주자 표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검색해야 하는 종이기록은 과거 5년간 획득한 것과 계좌와 관련된 모든 종이자료를 포함한다.  금융기구는 현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비거주자 표식 필드 정보를 전자로 검색해 낼 수 있는 경우, 종이기록검색을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21.2 고객 매니저에게 그 고객의 비거주자 개인여부를 문의한다.  제22조 기존 개인 저(低) 순자산가치계좌에 대하여, 2017년6월30일 이후 임의의 연도(양력)말 계좌의 총잔액 합산이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구는 다음해 12월31일 전, 본 방법의 제 2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비거주자 표식이 존재함을 발견한 기존개인계좌에 대해서, 금융기구는 현재 고객자료를 통해 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 개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좌 소지인에게 성명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성명이 중국 세수 거주자 개인인 경우, 금융기구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성명이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금융기구는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계좌 소지인은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성명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구는 그 계좌를 비거주자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표식이 존재함을 발견하지 못한 기존개인계좌에 대해서, 금융기구는 더 나아가 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좌상황 변동으로 비거주자 표식이생길 경우, 전관 규정 절차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대하여, 금융기구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인이 비거주자 개인임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그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기구계좌 실사  제25조 금융기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신규기구계좌에 대한 실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25.1 기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해당기구 수권인이 서명한 성명문서를 획득하여, 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기업과 소극적 비금융기구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성명문서는 계좌개설자료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성명문서 관련정보는 계좌 신청서에 통합할 수 있다.  25.2 금융기구는 개설자료(자금세탁방지 고객 신분식별 절차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포함) 또는 공개정보를 근거로 성명문서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작성정보가 기타정보와 확연한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성명문서에 불합리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여길 경우, 계좌 소지인에게 유효한 성명문서를 제출하거나 해석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유효한 성명문서 또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25.3 비거주자 기업으로 식별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동업기업 등 기구가 세수 거주자 신분을 갖추지 않았음을 성명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그 실제관리기구 소재지에 따라 그 세수 거주자 국가(지역)를(을)확정할 수 있다.  25.4 소극적 비금융기구로 식별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자금세탁방지 고객 신분식별 절차로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그 통제인을 식별하고, 기구 수권인 또는 통제인이 서명한 성명문건을 획득하여, 통제인이 비거주자 개인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통제인이 있는 소극적 비금융기구로 식별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소극적 비금융기구 및 그 통제인의 관련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 기업일 경우, 동시에 그 비거주자 통제인이 있는 소극적 비금융기구여부를 더 나아가 식별하여야 한다.  25.5 금융기구에서 신규기구계좌 상황에 변화가 생겨기존에 있던 성명문서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기구 수권인에게 유효한 성명문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구 수권인이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성명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구는 그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금융기구는 현재의 고객자료 또는 경외기구내 외화계좌 표식에 근거하여 기존기구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 기업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기구 수권인이 서명한 성명문서 또는 공개정보를 통해 중국 세수 거주자 기업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상술한 정보가 해당 기구가 비거주자 기업임을 표명하는 경우, 비거주자 기업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기업으로 식별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융기구는 기존기구계좌 소지인이 소극적 비금융기구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현재의 고객자료 또는 공개정보를 통해 소극적 비금융기구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 더 나아가 처리할 필요는 없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금융기구는 기구 수권인이 서명한 성명문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성명이 소극적 비금융기구인 경우, 제2관 규정에 따라 더 나아가 그 통제인을 식별하여야 한다. 성명문건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구는 계좌 소지인을 소극적 비금융기구로 간주하여야 한다.  소극적 비금융기구로 식별하고 또한 2017년6월30일까지 계좌의 총잔액 합산이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기구 통제인 또는 수권인이 서명한 성명문서를 획득하여, 통제인이 비거주자 개인임을 식별하여야 한다. 성명문서획득이 불가할 경우, 금융기구는 통제인에 대한 비거주자 표식검색을 전개하고, 비거주자 개인임을 식별하여야 한다.계좌의 총잔액 합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구는 현재의 고객자료를 근거로 소극적 비금융기구 통제인이 비거주자 개인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현재의 고객자료를 근거로 식별이 불가할 경우, 금융기구는 통제인 관련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자 통제인이 있는 소극적 비금융기구로 식별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소극적 비금융기구 및 그 통제인 관련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좌의 총잔액 합산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기구계좌의 경우, 금융기구가 2018년 12월 31일 전 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좌의 총잔액 합산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기존기구계좌의 경우, 금융기구는 실사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 단, 임의의 연도(양력)말 계좌의 총잔액 합산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다음 해 12월 31일 전 본 방법 제26조와 제27조 규정에 따라 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합규(준법)요구  제29조 금융기구는 자신의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신설계좌의 실사절차를 기본계좌에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금융기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기타기구에 위탁하는 경우, 대리판매기구는 위탁기구와 협조하여 본 방법에서 요구한 실사업무를 전개하고, 또한 위탁기구에 본 방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금융기구는 제3자에게 실사 전개를 위탁할 수 있으나 단, 관련책임은 여전히 금융기구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금 및 신탁 등 투자기구에 속하는 경우, 기금관리회사 및 신탁회사가 제3자의 신분으로 실사 관련업무를 완료하도록 구별할 수 있다.  제32조 금융기구는 계좌 소지인 정보변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계좌 소지인에게 본 방법에서 규정한 관련정보 변동일로부터 30일 내 금융기구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계좌소지인 관련정보가 변동되었음을 알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실사절차에 근거하여 계좌 소지인 또는 관련 통제인이 비거주자여부를 재 식별하여야 한다.  제33조 아래의 계좌에 대해서는 실사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  33.1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퇴직금 계좌  33.1.1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33.1.2 세수우대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33.1.3 세무기관에 계좌 관련정보를 신고 경우  33.1.4 규정된 퇴직연령 등 조건에 도달 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33.1.5 매년 납부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최종납부액 이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3.2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 보장류 계좌  33.2.1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33.2.2 세수우대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33.2.3 계좌설립 목적과 관련된 자금 수취, 의료 등 포함  33.2.4 매년 납부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3.3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기 생명보험계약  33.3.1 계약 존속기간 내 또는 피보험인 만기 90세 전(비교적 짧은 것을 기준으로 함), 적어도 연도별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가 수시로 연체되지 않은 경우  33.3.2 계약을 중지하는 않는 상황 하에, 어떠한 사람도 보험 가치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33.3.3 계약 해지 또는 중지 시, 지급해야 할 금액(사망위로금 불포함)이 계약 존속기간 관련 지출을 공제한 후, 해당 계약 누적 지급할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33.3.4 계약이 유가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없는 경우  33.4 아래의 사항으로 인해 개설하는 계좌  33.4.1 법원재정 또는 판결  33.4.2 부동산 또는 동산의 판매 및 거래 또는 임대  33.4.3 부동산 저당대출 상황 하에, 일부자금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또는 보험 지급용으로 미리 남겨두는 경우  33.4.4 세금지급 전용  33.5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금계좌  33.5.1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상환 또는 기타상환으로 인해 형성된 경우, 또한 초과액이 즉시 계좌 소지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33.5.2 계좌 소지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상환이 금지된 경우, 또는 계좌 소지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상환한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대금이 60일 이내에 계좌 소지인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33.6 전년도(양력) 잔액이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휴면계좌. 휴면계좌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계좌 (연금계약 불포함)  33.6.1 과거 3개 연도(양력) 중, 계좌 소지인이 금융기구에 계좌와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발기(发起)하지 않은 경우  33.6.2 과거 6개년도(양력) 중, 계좌 소지인이 금융기구와 계좌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도 소통하지 않은 경우  33.6.3 현금가치를 지닌 보험계약에 대해 과거 6개년도(양력) 중, 계좌 소지인이 금융기구와 계좌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도 소통하지 않은 경우  33.7 중국 정부기관, 사업단위, 군대, 무장경찰부대, 거주자 위원회, 촌민위원회, 지역사회위원회, 사회단체 등 단위가 보유한 계좌, 군인(무장경찰)이 보유한 군인(무장경찰)신분증으로 개설한 계좌  33.8 정책성 은행이 정부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  33.9 보험회사 간의 보상 재보험계약  제34조 금융기구는 본 방법 집행과정 중 수집한 자료를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고, 보존기한은 제출한 달의 기말부터 최소 5년이다. 관련자료는 전자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지만, 관련 업종관리감독부처와 국가세무총국의 요구에 따라 서면 버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융기구는 경내 분지기구(지점)에 제출하는 아래의 비거주자 계좌정보를 취합하고,또한 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구명칭, 주소 및 납세자식별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35.1 개인계좌 소지인의 성명, 현 거주지, 세수거주자 국가(지역), 거주자 국가(지역), 납세자식별번호, 출생지, 출생일자/ 기구계좌 소지인의 명칭, 주소, 세수 거주자 국가(지역), 거주자 국가(지역), 납세자식별번호/ 기구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 통제인이 있는 소극적 비금융기구인 경우에는 아울러 비거주자 통제인의 성명, 현 거주지, 세수 거주자 국가(지역), 거주자 국가(지역), 납세자식별번호, 출생지, 출생일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계좌번호 또는 유사정보  35.3 연도(양력) 말 단일 비거주자 계좌 잔액 또는 순가치(현금가치를 지닌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현금가치 또는 보험해약가치를 포함). 계좌가 당해연도 내 말소되는 경우, 잔액은 ‘0’이며, 동시에 계좌에 이미 말소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35.4 예금계좌, 연도(양력) 내 수령하였거나 또는 해당계좌에 계상된 이자총액을 제출한다.  35.5 위탁관리계좌, 연도(양력) 내 수령하였거나 해당 계좌에 계상된 이자총액, 주식 배당금 총액 및 기타 위탁관리를 받는 자산으로 인해 수령하였거나 해당 계좌에 계상된 수입총액을 제출한다. 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구가 대리인 및 중개인 또는 명의 소지인인 경우, 판매 또는 상황금액자산으로 인해 수령하였거나 해당 위탁관리계좌에 계상된 수입총액을 제출한다.  35.6 기타계좌, 연도(양력) 내 수령하였거나 또는 해당계좌에 계상된 수입총액을 제출하고, 상환자금의 총액을 포함한다.  35.7 국가세무총국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정보  상술한 정보 중 금액과 관련된 경우, 기존 통화에 따라 제출하고 기존 통화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기존계좌에 대해서, 금융기구는 현재의 고객자료 중 거주자 국가(지역) 납세자식별번호 및 출생일자 또는 출생지 정보가 없는 경우, 상술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금융기구는 상술한 계좌가 비거주자 계좌로 인정된 다음 해 12월 31일 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술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계좌 소지인이 거주자국가(지역)납세자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기구는 납세자식별번호 정보를 수집 및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36조 금융기구는 2017년 12월 31일 전 국가세무총국 사이트에 등록하여 등록등기를 처리하고, 또한 매년 5월 31일 전까지 요구에 따라 제35조에 상술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감독  제37조 금융기구는 모니터링체제를 구축∙실시하고, 연도별로 본 방법 집행상황을 평가하며, 문제를 발견한 적시에 시정하고, 또한 다음해 6월 30일 전 관련업종 관리감독부처와 국가세무총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금융기구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그 기한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38.1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실사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38.2 본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체제를 구축∙실시하지 않은 경우  38.3 고의로 계좌 소지인의 정보를 허위보고 및 누락 보고한 경우  38.4 계좌 소지인이 실제정보를 숨기거나 정보를 위조한 것을 방조한 경우  38.5 기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을 넘겨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관련한 납세관련 신용정보를 기록하여, 납세신용평가로 사용할 것이다.유관 위반 정황은 관련금융주관부처에 통보한다.  제39조 금융기구의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유관금융 주관부처는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9.1 금융기구가 휴업하고 정리하도록 하거나 그 경영허가증을 말소하도록 명령한다.  39.2 금융기구가 직접 책임지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한 임직자격을 취소하고, 그들이 유관 금융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39.3 금융기구가 직접 책임지는 동사 및 고급관리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기율처분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제40조 계좌 소지인의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유관금융 주관부처가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범죄와 연루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41조 본 방법 시행 전, 중국과 관련국가(지역)간 이미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 정보 실사사항에 관하여 쌍방 협정을 상의하여 체결한 경우, 유관요구는 별도 규정한다.  제42조 국가세무총국과 유관금융주관부처는 세무관련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세무총국이 적시에 본 방법에서 규정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보장한다.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 제출요구는 별도 규정한다.  제4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는 모두 그 수량을 포함하고, “미만”, “초과”는 모두 그 수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 본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发布《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财政部、中国人民银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7年第14号  　　为了履行金融账户涉税信息自动交换国际义务，规范金融机构对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的尽职调查行为，国家税务总局、财政部、中国人民银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制定了《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管理办法》，现予发布，自2017年7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  1.个人税收居民身份声明文件（样表）  2.机构税收居民身份声明文件（样表）  3.控制人税收居民身份声明文件(样表）  国家税务总局  财政部  人民银行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2017年5月9日  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履行《多边税收征管互助公约》和《金融账户涉税信息自动交换多边主管当局间协议》规定的义务，规范金融机构对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的尽职调查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依法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金融机构开展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工作，适用本办法。  　　第三条 金融机构应当遵循诚实信用、谨慎勤勉的原则，针对不同类型账户，按照本办法规定，了解账户持有人或者有关控制人的税收居民身份，识别非居民金融账户，收集并报送账户相关信息。  　　第四条 金融机构应当建立完整的非居民金融账户尽职调查管理制度，设计合理的业务流程和操作规范，并定期对本办法执行落实情况进行评估，妥善保管尽职调查过程中收集的资料，严格进行信息保密。金融机构应当对其分支机构执行本办法规定的尽职调查工作作出统一要求并进行监督管理。  　　金融机构应当向账户持有人充分说明本机构需履行的信息收集和报送义务，不得明示、暗示或者帮助账户持有人隐匿身份信息，不得协助账户持有人隐匿资产。  　　第五条 账户持有人应当配合金融机构的尽职调查工作，真实、及时、准确、完整地向金融机构提供本办法规定的相关信息，并承担未遵守本办法规定的责任和风险。  第二章 基本定义  　　第六条 本办法所称金融机构，包括存款机构、托管机构、投资机构、特定的保险机构及其分支机构：  　　（一）存款机构是指在日常经营活动中吸收存款的机构；  　　（二）托管机构是指近三个会计年度总收入的百分之二十以上来源于为客户持有金融资产的机构，机构成立不满三年的，按机构存续期间计算；  　　（三）投资机构是指符合以下条件之一的机构：  　　1.近三个会计年度总收入的百分之五十以上来源于为客户投资、运作金融资产的机构，机构成立不满三年的，按机构存续期间计算；  　　2.近三个会计年度总收入的百分之五十以上来源于投资、再投资或者买卖金融资产，且由存款机构、托管机构、特定的保险机构或者本项第1目所述投资机构进行管理并作出投资决策的机构，机构成立不满三年的，按机构存续期间计算；  　　3.证券投资基金、私募投资基金等以投资、再投资或者买卖金融资产为目的而设立的投资实体。  　　（四）特定的保险机构是指开展有现金价值的保险或者年金业务的机构。本办法所称保险机构是指上一公历年度内，保险、再保险和年金合同的收入占总收入比重百分之五十以上的机构，或者在上一公历年度末拥有的保险、再保险和年金合同的资产占总资产比重百分之五十以上的机构。  本办法所称金融资产包括证券、合伙权益、大宗商品、掉期、保险合同、年金合同或者上述资产的权益，前述权益包括期货、远期合约或者期权。金融资产不包括实物商品或者不动产非债直接权益。  　　第七条 下列机构属于本办法第六条规定的金融机构：  　　（一）商业银行、农村信用合作社等吸收公众存款的金融机构以及政策性银行；  　　（二）证券公司；  　　（三）期货公司；  　　（四）证券投资基金管理公司、私募基金管理公司、从事私募基金管理业务的合伙企业；  　　（五）开展有现金价值的保险或者年金业务的保险公司、保险资产管理公司；  　　（六）信托公司；  　　（七）其他符合条件的机构。  　　第八条 下列机构不属于本办法第六条规定的金融机构：  　　（一）金融资产管理公司；  　　（二）财务公司；  　　（三）金融租赁公司；  　　（四）汽车金融公司；  　　（五）消费金融公司；  　　（六）货币经纪公司；  　　（七）证券登记结算机构；  　　（八）其他不符合条件的机构。  　　第九条 本办法所称金融账户包括：  　　（一）存款账户，是指开展具有存款性质业务而形成的账户，包括活期存款、定期存款、旅行支票、带有预存功能的信用卡等。  　　（二）托管账户，是指开展为他人持有金融资产业务而形成的账户，包括代理客户买卖金融资产的业务以及接受客户委托、为客户管理受托资产的业务：  　　1.代理客户买卖金融资产的业务包括证券经纪业务、期货经纪业务、代理客户开展贵金属、国债业务或者其他类似业务；  　　2.接受客户委托、为客户管理受托资产的业务包括金融机构发起、设立或者管理不具有独立法人资格的理财产品、基金、信托计划、专户/集合类资产管理计划或者其他金融投资产品。  　　（三）其他账户，是指符合以下条件之一的账户：  　　1.投资机构的股权或者债权权益，包括私募投资基金的合伙权益和信托的受益权；  　　2.具有现金价值的保险合同或者年金合同。  　　第十条 本办法所称非居民是指中国税收居民以外的个人和企业（包括其他组织），但不包括政府机构、国际组织、中央银行、金融机构或者在证券市场上市交易的公司及其关联机构。前述证券市场是指被所在地政府认可和监管的证券市场。中国税收居民是指中国税法规定的居民企业或者居民个人。  　　本办法所称非居民金融账户是指在我国境内的金融机构开立或者保有的、由非居民或者有非居民控制人的消极非金融机构持有的金融账户。金融机构应当在识别出非居民金融账户之日起将其归入非居民金融账户进行管理。  　　账户持有人同时构成中国税收居民和其他国家（地区）税收居民的，金融机构应当按照本办法规定收集并报送其账户信息。  　　第十一条 本办法所称账户持有人是指由金融机构登记或者确认为账户所有者的个人或者机构，不包括代理人、名义持有人、授权签字人等为他人利益而持有账户的个人或者机构。  　　现金价值保险合同或者年金合同的账户持有人是指任何有权获得现金价值或者变更合同受益人的个人或者机构，不存在前述个人或者机构的，则为合同所有者以及根据合同条款对支付款项拥有既得权利的个人或者机构。现金价值保险合同或者年金合同到期时，账户持有人包括根据合同规定有权领取款项的个人或者机构。  　　第十二条 本办法所称消极非金融机构是指符合下列条件之一的机构：  　　（一）上一公历年度内，股息、利息、租金、特许权使用费收入等不属于积极经营活动的收入，以及据以产生前述收入的金融资产的转让收入占总收入比重百分之五十以上的非金融机构；  　　（二）上一公历年度末，拥有可以产生本款第一项所述收入的金融资产占总资产比重百分之五十以上的非金融机构；  　　（三）税收居民国（地区）不实施金融账户涉税信息自动交换标准的投资机构。  　　下列非金融机构不属于消极非金融机构：  　　（一）上市公司及其关联机构；  　　（二）政府机构或者履行公共服务职能的机构；  　　（三）仅为了持有非金融机构股权或者向其提供融资和服务而设立的控股公司；  　　（四）成立时间不足二十四个月且尚未开展业务的企业；  　　（五）正处于资产清算或者重组过程中的企业；  　　（六）仅与本集团（该集团内机构均为非金融机构）内关联机构开展融资或者对冲交易的企业；  　　（七）非营利组织。  　　第十三条 本办法所称控制人是指对某一机构实施控制的个人。  　　公司的控制人按照以下规则依次判定：  　　（一）直接或者间接拥有超过百分之二十五公司股权或者表决权的个人；  　　（二）通过人事、财务等其他方式对公司进行控制的个人；  　　（三）公司的高级管理人员。  　　合伙企业的控制人是拥有超过百分之二十五合伙权益的个人。  　　信托的控制人是指信托的委托人、受托人、受益人以及其他对信托实施最终有效控制的个人。  　　基金的控制人是指拥有超过百分之二十五权益份额或者其他对基金进行控制的个人。  　　第十四条 本办法所称关联机构是指一个机构控制另一个机构，或者两个机构受到共同控制，则该两个机构互为关联机构。  　　前款所称控制是指直接或者间接拥有机构百分之五十以上的股权和表决权。  　　第十五条 本办法所称金融账户包括存量账户和新开账户。  　　存量账户是指符合下列条件之一的账户，包括存量个人账户和存量机构账户：  　　（一）截至2017年6月30日由金融机构保有的、由个人或者机构持有的金融账户；  　　（二）2017年7月1日（含当日，下同）以后开立并同时符合下列条件的金融账户：  　　1.账户持有人已在同一金融机构开立了本款第一项所述账户的；  　　2.上述金融机构在确定账户加总余额时将本款第二项所述账户与本款第一项所述账户视为同一账户的；  　　3.金融机构已经对本款第一项所述账户进行反洗钱客户身份识别的；  　　4.账户开立时，账户持有人无需提供除本办法要求以外的其他信息的。  　　存量个人账户包括低净值账户和高净值账户，低净值账户是指截至2017年6月30日账户加总余额不超过相当于一百万美元（简称“一百万美元”，下同）的账户，高净值账户是指截至2017年6月30日账户加总余额超过一百万美元的账户。  　　新开账户是指2017年7月1日以后在金融机构开立的，除第二款第二项规定账户外，由个人或者机构持有的金融账户，包括新开个人账户和新开机构账户。  　　第十六条 本办法所称账户加总余额是指账户持有人在同一金融机构及其关联机构所持有的全部金融账户余额或者资产的价值之和。  　　金融机构需加总的账户限于通过计算机系统中客户号、纳税人识别号等关键数据项能够识别的所有金融账户。  　　联名账户的每一个账户持有人，在加总余额时应当计算该联名账户的全部余额。  　　在确定是否为高净值账户时，客户经理知道或者应当知道在其供职的金融机构内几个账户直接或者间接由同一个人拥有或者控制的，应当对这些账户进行加总。  　　前款所称客户经理是指由金融机构指定、与特定客户有直接联系，根据客户需求向客户介绍、推荐或者提供相关金融产品、服务或者提供其他协助的人员，但不包括符合前述条件，仅由于偶然性原因为客户提供上述服务的人员。  　　金融机构在计算账户加总余额时，账户币种为非美元的，应当按照计算日当日中国人民银行公布的外汇中间价折合为美元计算。折合美元时，可以根据原币种金额折算，也可以根据该金融机构记账本位币所记录的金额进行折算。  　　第十七条 本办法所称非居民标识是指金融机构用于检索判断存量个人账户持有人是否为非居民个人的有关要素，具体包括：  　　（一）账户持有人的境外身份证明；  　　（二）账户持有人的境外现居地址或者邮寄地址，包括邮政信箱；  　　（三）账户持有人的境外电话号码，且没有我国境内电话号码；  　　（四）存款账户以外的账户向境外账户定期转账的指令；  　　（五）账户代理人或者授权签字人的境外地址；  　　（六）境外的转交地址或者留交地址，并且是唯一地址。转交地址是指账户持有人要求将其相关信函寄给转交人的地址，转交人收到信函后再交给账户持有人。留交地址是指账户持有人要求将其相关信函暂时存放的地址。  　　第十八条 本办法所称证明材料是指：  　　（一）由政府出具的税收居民身份证明；  （二）由政府出具的含有个人姓名且通常用于身份识别的有效身份证明，或者由政府出具的含有机构名称以及主要办公地址或者注册成立地址等信息的官方文件。  第三章 个人账户尽职调查  　　第十九条 金融机构应当按照以下规定，对新开个人账户开展尽职调查：  　　（一）个人开立账户时，金融机构应当获取由账户持有人签署的税收居民身份声明文件（以下简称“声明文件”），识别账户持有人是否为非居民个人。金融机构通过本机构电子渠道接收个人账户开户申请时，应当要求账户持有人提供电子声明文件。声明文件应当作为开户资料的一部分，声明文件相关信息可并入开户申请书中。个人代理他人开立金融账户以及单位代理个人开立金融账户时，经账户持有人书面授权后可由代理人签署声明文件。  　　（二）金融机构应当根据开户资料（包括通过反洗钱客户身份识别程序收集的资料），对声明文件的合理性进行审核，主要确认填写信息是否与其他信息存在明显矛盾。金融机构认为声明文件存在不合理信息时，应当要求账户持有人提供有效声明文件或者进行解释。不提供有效声明文件或者合理解释的，不得开立账户。  　　（三）识别为非居民个人的，金融机构应当收集并记录报送所需信息。  　　（四）金融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新开个人账户情况发生变化导致原有声明文件信息不准确或者不可靠的，应当要求账户持有人提供有效声明文件。账户持有人自被要求提供之日起九十日内未能提供声明文件的，金融机构应当将其账户视为非居民账户管理。  　　第二十条 金融机构应当于2018年12月31日前选择以下方式完成对存量个人低净值账户的尽职调查：  　　（一）对于在现有客户资料（包括通过反洗钱客户身份识别程序收集的资料，下同）中留有地址，且有证明材料证明是现居地址或者地址位于现居国家（地区）的账户持有人，可以根据账户持有人的地址确定是否为非居民个人。邮寄无法送达的，不得将客户资料所留地址视为现居地址。  　　（二）利用现有信息系统开展电子记录检索，识别账户是否存在任一非居民标识。  　　现有客户资料中没有现居地址信息的，或者账户情况发生变化导致现居地址证明材料不再准确的，金融机构应当采用前款第二项方式开展尽职调查。  　　第二十一条 金融机构应当在2017年12月31日前对存量个人高净值账户依次完成以下尽职调查程序：  　　（一）开展电子记录检索和纸质记录检索，识别账户是否存在任一非居民标识。应当检索的纸质记录包括过去五年中获取的、与账户有关的全部纸质资料。  　　金融机构利用现有信息系统可电子检索出全部非居民标识字段信息的，可以不开展纸质记录检索。  　　（二）询问客户经理其客户是否为非居民个人。  　　第二十二条 对于存量个人低净值账户，2017年6月30日之后任一公历年度末账户加总余额超过一百万美元时，金融机构应当在次年12月31日前，按照本办法第二十一条规定程序完成对账户的尽职调查。  　　第二十三条 对发现存在非居民标识的存量个人账户，金融机构可以通过现有客户资料确认账户持有人为非居民个人的，应当收集并记录报送所需信息。无法确认的，应当要求账户持有人提供声明文件。声明为中国税收居民个人的，金融机构应当要求其提供相应证明材料；声明为非居民个人的，金融机构应当收集并记录报送所需信息。账户持有人自被要求提供之日起九十日内未能提供声明文件的，金融机构应当将其账户视为非居民账户管理。  　　对未发现存在非居民标识的存量个人账户，金融机构无需作进一步处理，但应当建立持续监控机制。当账户情况变化出现非居民标识时，应当执行前款规定程序。  　　第二十四条 对于现金价值保险合同或者年金合同，金融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获得死亡保险金的受益人为非居民个人的，应当将其账户视为非居民账户管理。  第四章 机构账户尽职调查  　　第二十五条 金融机构应当按照以下规定，对新开机构账户开展尽职调查：  　　（一）机构开立账户时，金融机构应当获取由该机构授权人签署的声明文件，识别账户持有人是否为非居民企业和消极非金融机构。声明文件应当作为开户资料的一部分，声明文件相关信息可并入开户申请书中。  　　（二）金融机构应当根据开户资料（包括通过反洗钱客户身份识别程序收集的资料）或者公开信息对声明文件的合理性进行审核，主要确认填写信息是否与其他信息存在明显矛盾。金融机构认为声明文件存在不合理信息时，应当要求账户持有人提供有效声明文件或者进行解释。不提供有效声明文件或者合理解释的，不得开立账户。  　　（三）识别为非居民企业的，金融机构应当收集并记录报送所需信息。合伙企业等机构声明不具有税收居民身份的，金融机构可按照其实际管理机构所在地确定其税收居民国（地区）。  　　（四）识别为消极非金融机构的，金融机构应当依据反洗钱客户身份识别程序收集的资料识别其控制人，并且获取机构授权人或者控制人签署的声明文件，识别控制人是否为非居民个人。识别为有非居民控制人的消极非金融机构的，金融机构应当收集并记录消极非金融机构及其控制人相关信息。  　　账户持有人为非居民企业的，也应当进一步识别其是否同时为有非居民控制人的消极非金融机构。  　　（五）金融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新开机构账户情况发生变化导致原有声明文件信息不准确或者不可靠的，应当要求机构授权人提供有效声明文件。机构授权人自被要求提供之日起九十日内未能提供声明文件的，金融机构应当将其账户视为非居民账户管理。  　　第二十六条 金融机构应当根据现有客户资料或者境外机构境内外汇账户标识，识别存量机构账户持有人是否为非居民企业。  　　除通过机构授权人签署的声明文件或者公开信息能确认为中国税收居民企业的外，上述信息表明该机构为非居民企业的，应当识别为非居民企业。  　　识别为非居民企业的，金融机构应当收集并记录报送所需信息。  　　第二十七条 金融机构应当识别存量机构账户持有人是否为消极非金融机构。通过现有客户资料或者公开信息确认不是消极非金融机构的，无需进一步处理。无法确认的，金融机构应当获取由机构授权人签署的声明文件。声明为消极非金融机构的，应当按照第二款规定进一步识别其控制人。无法获取声明文件的，金融机构应当将账户持有人视为消极非金融机构。  　　识别为消极非金融机构并且截至2017年6月30日账户加总余额超过一百万美元的，金融机构应当获取由机构控制人或者授权人签署的声明文件，识别控制人是否为非居民个人。无法获取声明文件的，金融机构应当针对控制人开展非居民标识检索，识别其是否为非居民个人。账户加总余额不超过一百万美元的，金融机构可以根据现有客户资料识别消极非金融机构控制人是否为非居民个人。根据现有客户资料无法识别的，金融机构可以不收集控制人相关信息。  　　识别为有非居民控制人的消极非金融机构的，金融机构应当收集并记录消极非金融机构及其控制人相关信息。  　　第二十八条 截至2017年6月30日账户加总余额超过二十五万美元的存量机构账户，金融机构应当在2018年12月31日前完成对账户的尽职调查。  　　截至2017年6月30日账户加总余额不超过二十五万美元的存量机构账户，金融机构无需开展尽职调查。但当之后任一公历年度末账户加总余额超过二十五万美元时，金融机构应当在次年12月31日前，按照本办法第二十六条和第二十七条规定完成对账户的尽职调查。  第五章 其他合规要求  　　第二十九条 金融机构可以根据自身业务需要，将新开账户的尽职调查程序适用于存量账户。  　　第三十条 金融机构委托其他机构向客户销售金融产品的，代销机构应当配合委托机构开展本办法所要求的尽职调查工作，并向委托机构提供本办法要求的信息。  　　第三十一条 金融机构可以委托第三方开展尽职调查，但相关责任仍应当由金融机构承担。基金、信托等属于投资机构的，可以分别由基金管理公司、信托公司作为第三方完成尽职调查相关工作。  　　第三十二条 金融机构应当建立账户持有人信息变化监控机制，包括要求账户持有人在本办法规定的相关信息变化之日起三十日内告知金融机构。金融机构在知道或者应当知道账户持有人相关信息发生变化之日起九十日内或者本年度12月31日前根据有关尽职调查程序重新识别账户持有人或者有关控制人是否为非居民。  　　第三十三条 对下列账户无需开展尽职调查：  　　（一）同时符合下列条件的退休金账户：  　　1.受政府监管；  　　2.享受税收优惠；  　　3.向税务机关申报账户相关信息；  　　4.达到规定的退休年龄等条件时才可取款；  　　5.每年缴款不超过五万美元，或者终身缴款不超过一百万美元。  　　（二）同时符合下列条件的社会保障类账户：  　　1.受政府监管；  　　2.享受税收优惠；  　　3.取款应当与账户设立的目的相关，包括医疗等；  　　4.每年缴款不超过五万美元。  　　（三）同时符合下列条件的定期人寿保险合同：  　　1.在合同存续期内或者在被保险人年满九十岁之前（以较短者为准），至少按年度支付保费，且保费不随时间递减；  　　2.在不终止合同的情况下，任何人均无法获取保险价值；  　　3.合同解除或者终止时，应付金额（不包括死亡抚恤金）在扣除合同存续期间相关支出后，不得超过为该合同累计支付的保费总额；  　　4.合同不得通过有价方式转让。  　　（四）为下列事项而开立的账户：  　　1.法院裁定或者判决；  　　2.不动产或者动产的销售、交易或者租赁；  　　3.不动产抵押贷款情况下，预留部分款项便于支付与不动产相关的税款或者保险；  　　4.专为支付税款。  　　（五）同时符合下列条件的存款账户：  　　1.因信用卡超额还款或者其他还款而形成，且超额款项不会立即返还账户持有人；  2.禁止账户持有人超额还款五万美元以上，或者账户持有人超额还款五万美元以上的款项应当在六十日内返还账户持有人。  　　（六）上一公历年度余额不超过一千美元的休眠账户。休眠账户是满足下列条件之一的账户（不包括年金合同）：  　　1.过去三个公历年度中，账户持有人未向金融机构发起任何与账户相关的交易；  　　2.过去六个公历年度中，账户持有人未与金融机构沟通任何与账户相关的事宜；  　　3.对于具有现金价值的保险合同，在过去六个公历年度中，账户持有人未与金融机构沟通任何与账户相关的事宜。  　　（七）由我国政府机关、事业单位、军队、武警部队、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社区委员会、社会团体等单位持有的账户；由军人（武装警察）持军人（武装警察）身份证件开立的账户。  　　（八）政策性银行为执行政府决定开立的账户。  　　（九）保险公司之间的补偿再保险合同。  　　第三十四条 金融机构应当妥善保管本办法执行过程中收集的资料，保存期限为自报送期末起至少五年。相关资料可以以电子形式保存，但应当确保能够按照相关行业监督管理部门和国家税务总局的要求提供纸质版本。  　　第三十五条 金融机构应当汇总报送境内分支机构的下列非居民账户信息，并注明报送信息的金融机构名称、地址以及纳税人识别号：  　　（一）个人账户持有人的姓名、现居地址、税收居民国（地区）、居民国（地区）纳税人识别号、出生地、出生日期；机构账户持有人的名称、地址、税收居民国（地区）、居民国（地区）纳税人识别号；机构账户持有人是有非居民控制人的消极非金融机构的，还应当报送非居民控制人的姓名、现居地址、税收居民国（地区）、居民国（地区）纳税人识别号、出生地、出生日期。  　　（二）账号或者类似信息。  　　（三）公历年度末单个非居民账户的余额或者净值（包括具有现金价值的保险合同或者年金合同的现金价值或者退保价值）。账户在本年度内注销的，余额为零，同时应当注明账户已注销。  　　（四）存款账户，报送公历年度内收到或者计入该账户的利息总额。  　　（五）托管账户，报送公历年度内收到或者计入该账户的利息总额、股息总额以及其他因被托管资产而收到或者计入该账户的收入总额。报送信息的金融机构为代理人、中间人或者名义持有人的，报送因销售或者赎回金融资产而收到或者计入该托管账户的收入总额。  　　（六）其他账户，报送公历年度内收到或者计入该账户的收入总额，包括赎回款项的总额。  　　（七）国家税务总局要求报送的其他信息。  　　上述信息中涉及金额的，应当按原币种报送并且标注原币种名称。  　　对于存量账户，金融机构现有客户资料中没有居民国（地区）纳税人识别号、出生日期或者出生地信息的，无需报送上述信息。但是，金融机构应当在上述账户被认定为非居民账户的次年12月31日前，积极采取措施，获取上述信息。  　　非居民账户持有人无居民国（地区）纳税人识别号的，金融机构无需收集并报送纳税人识别号信息。  　　第三十六条 金融机构应当于2017年12月31日前登录国家税务总局网站办理注册登记，并且于每年5月31日前按要求报送第三十五条所述信息。    第六章 监督管理  　　第三十七条 金融机构应当建立实施监控机制，按年度评估本办法执行情况，及时发现问题、进行整改，并于次年6月30日前向相关行业监督管理部门和国家税务总局书面报告。  　　第三十八条 金融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家税务总局责令其限期改正：  　　（一）未按照本办法规定开展尽职调查的；  　　（二）未按照本办法建立实施监控机制的；  　　（三）故意错报、漏报账户持有人信息的；  　　（四）帮助账户持有人隐藏真实信息或者伪造信息的；  　　（五）其他违反本办法规定的。  　　逾期不改正的，税务机关将记录相关纳税信用信息，并用于纳税信用评价。有关违规情形通报相关金融主管部门。  　　第三十九条 对于金融机构的严重违规行为，有关金融主管部门可以采取下列措施：  　　（一）责令金融机构停业整顿或者吊销其经营许可证；  　　（二）取消金融机构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任职资格、禁止其从事有关金融行业的工作；  　　（三）责令金融机构对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给予纪律处分。  　　第四十条 对于账户持有人的严重违规行为，有关金融主管部门依据相关法律、法规进行处罚，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进行处理。  第七章 附 则  　　第四十一条 本办法施行前我国与相关国家（地区）已经就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事项商签双边协定的，有关要求另行规定。  　　第四十二条 国家税务总局与有关金融主管部门建立涉税信息共享机制，保障国家税务总局及时获取本办法规定的信息。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报送要求另行规定。  　　第四十三条 本办法所称“以上”“以下”均含本数，“不满”“超过”均不含本数。  　　第四十四条 本办法自2017年7月1日起施行。 |